#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The Causes and Prevention Measures for Criminals' Suicide during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Korea

연성진 | 안성훈





## 발 간 사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들은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내실 있는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이 연구가 검찰 실무에 있어서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방안 마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책임지고 성심껏 수행해주신 형사정책연구원의 연성진 선임 연구위원과 안성훈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 수 수

# 목 차 📗

국문요약	9
제1강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1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23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31
제1절 현황	33
제2절 분석결과	42
제4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4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	
제3절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1. 검찰수사와 피조사자	
2. 언론과 피조사자	
3. 정치권력과 피조사자	
제4절 자살원인에 따른 자살의 유형	
1. 회피형 자살	
2. 이해형 자살	
3. 해결형 자살	
4. 배려형 자살	
5. 비난형 자살	
6. 각인형 자살	
7. 고발형 자살	

8. 탄원형 가살	1
9. 정신장애형 자살	2
제5절 소결	3
제5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6	5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7
제2절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7	2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7	8
제4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7	'9
제5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3
<b>제6강 결론</b>	55
참고문헌8	39
5	
Abstract9	7
Abstract	,
HP .	_
부록9	9

## 표 차례

〈표 3-1〉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사건 발생 현황 ·············· 33
〈표 5-1〉 자살위험성 평가척도(1)-조사자 기입71
〈표 5-2〉 자살위험성 평가척도(2)-피조사자 기입71
〈표 5-3〉 자살위험성 평가척도(3)-피조사자 기입 ···································
그림 차례
[그림 3-1] 연도별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 40
[그림 3-2] 전국 지검 및 지청별 피조사자 자살자 수 40
[그림 3-3]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가 자살한 사건의 범죄유형 41
[그림 3-4]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피조사자의 화이트칼라 비율 42
[그림 3-5]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피조사자의 공직자 비율 42
[그림 4-1] 사회적 스캔들의 과정 50
[그림 4-2]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 및 경로50

## 국문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 자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검찰 수사 중에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둘러싼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통해 자살사건의 연도별 추세, 피조사자의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내용들을 뉴스매체의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사건 발생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검찰 수사상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 가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뽑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 발생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였다.

### 3.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자살사건 발생현황' 자료(<표 1> 참조)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사람은 모두 83명에 이르고 있다.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던 피조사자의 자살자 숫자가 2011년 이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불리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강화된 이후 피조사자의 자살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둘째, 전국 지검 및 지청 별 피조사자 자살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두 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 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오차 범위 밖의 많은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비교할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달리어떠한 원인이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일반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 원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조사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많은 피조사자 중에서 일부만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다. 피조사자가 겪는 문제 상황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자살자 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즉 문제 상황에서 자살해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뇌물비리,

인사비리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문제상황이 자살자들의 객관적 상황이라면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데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살자들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상황 자체가 개인의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부터 야기된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입의 전제로서는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5.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방지 대책

### 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이 반드시 화이트칼라 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피조사자들에 대한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자들과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스캔들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혐의를 캐기 위해 피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 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부담을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자살을하는 등의 배려형 자살이나 회피형 자살, 해결형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공포를 더 심하게 느끼고 우울증 등과 같 은 급성정신장애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정신과의의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엘 리트들은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쉽게 패배자로 낙인찍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엘리트 중년 남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실행한 사람의 거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병이 10%, 치매나 섬망이 5%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담당자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전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조사과정에서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관을 지정하여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나.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범죄수사는 대부분이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사실을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측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해명하고 부인하려는 피조사자의 상반되고 대립되는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경우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 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검찰 입장에서도 수집한 다양한 혐의사실의 단서들로부터 피조사자가 감추려고 하는 범죄내용들을 집요하게 캐내어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의 전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도 하나, 실제로 최근에 이와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최근 영상녹화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 장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수사에서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나 자백 강요 등의 우려 등을 염려하여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위협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강요는 물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된 영상물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8조의 피의자 수사 상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준수의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등 조사에 있어서 피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 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구체적인 사례에 근 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 다.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언론의 범죄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침해가 결국 피조사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조사자의 자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따 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 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

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을 정도로 관련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었다. 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가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본죄의 행위주체가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진 경우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되므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도 범죄관련자의 인격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 저질러져도 언론에 대한 형사책임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식, 언론피해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 라.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폭로 중심의 보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내용이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사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서 80%가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의단계 내지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보도에 치중된 이유는 범죄보도의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폭로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전통적인 개인적 강력범죄들을 보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신종범죄(예를 들면 인터넷 사기 범죄), 재벌기업비리,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범죄유형들은 매우 높은 기사가치를 가지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리 혹은 의혹사건에 대하여 언론은 단발성 보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집이나 기획형식의 심층보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24시간동안 시청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속칭 종편방송)의 등장으로 하루 종일 사건 관련 내용 방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회이목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련자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의 취재경쟁이 치열하고 이 와중에 출석자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인터 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사기관 청사 진입을 강제로 방해하는 등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사선상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아예 범인으로 단정 보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개정 2013.7.11. 법무부훈령 제903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이 수사실무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수사실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달리 획득할 수 없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조사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의 수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없다. 이와 같이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이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법 상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1장 ■

서 론

## 제1장

##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현재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자숙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왜 그랬었는지도 모르겠고, 죽고 싶은 마음이야..

엄청 많이 들고...

잘못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 매일같이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살을 할까... 인생 종 쳤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기회는 있는 걸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이미 지나간 일이고...

부모님께도 고개들지 못해....

죽을 지경이네요... 친, 외가 쪽도... 죄책감.. 뵙기도 힘들고...

만약 자살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게... 종결이 되는거죠?

그냥..

원망과 후회.. 반성...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 다 있는데...

반성하면서.. 살고 있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

제 자신에게 원망하고...

죽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럴 바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2012년 8월 23일 네이버 지식in 중에서)1)

앞의 내용은 인터넷 상에 자신의 고민을 상담 의뢰한 내용의 일부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중에 있는 피조사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소위 청와대문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최○○ 경위의 자살로 인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조사자의 자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sup>1)</sup>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57123757&qb=6rKA7LCwIOyI mOyCrOykkSDsnpDsgr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5C4x soRR0wssbf7U88ssssssN-338236&sid=VJkIxAoUU0wAAGSLOMY

<sup>2)</sup>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 개인의 자살은 더이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곧 잊혀버리는 것이 현실이고, 그 연장선에서 수사 중에일어나는 자살사건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살사건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자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수사 중 일어난 자살의 문제를 극단적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아 과거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들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뒤에서 분석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검찰 수사 중에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둘러싼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살이 일어나는 상황적, 제도적 환경과 사건발생과 전개의 과정 및 구조를 살펴보았다.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 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비롯한 이차자료(secondary data)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살사건의 연도별 추세, 피조사자의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내용들을 뉴스매체의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사건 발생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검찰 수사상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 가족, 검찰 등 수사기

#### 22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관의 수사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뽑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 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전체 구성은, 먼저 제2장에서 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 및 자살일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2004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 검찰 수사 중 발생한 자살사건들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은 제3장의 분석결과 및 이차자료들과 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제5장은 수사 중 발생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2장

# 선행연구의 검토

## 선행연구의 검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케임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서구 유럽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자살률의 증가를 경제적 상황과 관련시켜 설명하였으며 또 개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나 사회적 규제의 정도에 따라 거시적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 자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3 자살이라는 현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제도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자살의 정도가 다르고 한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범죄피의자들이나 참고인 등 피조사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 중 자살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단지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구조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인들의 높은 자살률이 피조사자들의 높은 자살률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현된 것인지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자살과 관련한 연구들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과 관련한 국내외 관

Durkheim, Emile (1951[1897]).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련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자살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자살의 유형 및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발전시켜 제4장에서는 검찰 수사 중 발생하는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되르케임은 사회통합과 사회규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살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4) 사회통합의 수준이 강하면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이 발생하고 약하면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규제의 수준이 강하면 '체념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반대로 약하면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 발생한다. 뒤르케임의 설명에 따르면, '이타적 자살'은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밖에 존재하는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이기적 자살'은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을 경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개인중심적인 삶을 영위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범이 인간의 욕망과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며, 반대로 과도한 규제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개인을 압박할 경우 체념적 자살이 많아지게 된다. 뒤르케임은 특히 경기변동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잦은 현대사회에서 충분한 수준의 사회규제가 뒤따르지 못하면 아노미적 자살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집스와 마틴의 연구(1965)는 사회통합의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 간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할들 가운데 일부를 버려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 지않을 경우 자살을 그 해결방법으로 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5) 웬즈(1974)는 아노미를 '의미없음'과 '목표상실'의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참여도를 통해 아노미의 징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조직에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은 사회통합의 결핍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켜

<sup>4)</sup> Durkheim, Emile, 위의 책 여러 곳을 볼 것.

<sup>5)</sup> 박형민(2008), "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 - 1997년~2006년 유서분석과 소통적 자살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쪽.

자살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6

파웰(1958)은 '자아의 사회적 정당화가 인간의 근원적인 목표'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할 때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웰은 자아의 정당화를 직업적-경제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했다는 한계를 지녔으나, 자신이 스스로 상황에 대한 '정당화'라는 성찰적 과정을 설정하여 객관적인 문제상황이 주관적 좌절로서의 아노미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 브리드는 자신에 대한 '유의미한 타자'의 평가가 자아의 주관적 정당화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였다.

김왕배(2010)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세 유형의 자살로 전직대통령의 자살, 인터넷을 통한 집단동반자살,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증한 노인자살로 분류하고 그 자살유형들의 원인을 사회 해체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각 유형의 자살 원인으로 후진적인 정치문화, 가족형 결속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의 집단성 출몰,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가족해체와 지원망 결여를 논하였다. 이는 모두 규범과 제도의 해체라는 큰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살유형들을 사회적 통합성과 사회적 파급력의 두 축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분류를 이론화하였다. 그는 특히 전직대통령의 자살 사례를 대의명분형 자살로 규정하며 다수의 타인들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이해관계, 가치, 이념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8

김효창은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반하여 성인 자살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인 자살을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자살의 38.4%는 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6명, 23%), 취약성 요인으로 인한 자살 중에는 개인적 요인이 60.8%(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정신건강문제가 39.6%(19건)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자살에는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관여한다. 취약성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촉발사건은 좌절경험 또는 개인적 문제행동에 의한 개인적 위기사건과 대

<sup>6)</sup> 위의 논문, 17쪽.

<sup>7)</sup> 위의 논문, 20~21쪽.

<sup>8)</sup> 김왕배(2010),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197~203쪽.

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대인관계적 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는 경찰서에 접수된 자살사건에 대한 기록지를 분석하여 자살과정에서 취약성 요인만 드러나는 취약형 자살, 촉발사건만 드러나는 사건반응형 자살,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동시에 드러나는 복합형 자살로 분류하였다. 그는 취약형 자살은 타집단에 비해 자살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요청된다고 논하였다. 사건반응형 자살은 감정조절에 실패함에 따른 충동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고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박형민(2013)은 자살을 부정적인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려는 주체적 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는 김왕배(2010)의 대의명분형 자살 논의와도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자살이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는 자기 귀책적이든, 타인 전가적이든 그것을 타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시지의 형식역시 정서적인 것과 문제지향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틀에 따라 박형민은 자살의 유형을 회피, 이해, 해결, 배려, 비난, 각인, 고발, 탄원의 여덟 가지로 규정한다. 그는 자살을 충동, 감정조절장애, 문제해결력의 결여 등 합리성의 부족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삶과 미래의 죽음에 결과에 대한 성찰적 과정을 거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의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으로 논한다. 물론 이는 결코 자살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며, 자살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인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고안해내지 않는 이상 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10

한편 검찰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는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문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sup>11)</sup> 성인범죄자들이나 청소년 범죄자들이 시설 내 수용 중에 발생하는

<sup>9)</sup> 김효창(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5~30쪽.

<sup>10)</sup> 박형민(2013), "소통방식으로서의 자살", 문화/과학 통권74호, 67~86쪽.

<sup>11)</sup> 오히려 수사 과정이나 사건종결 이후에 수사관들이 겪는 자살 등을 포함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은 많다. 이러한 연구들을 잘 정리해 놓은 연구로 Haugena, Peter T., Evcesa, Mark, and Weiss, Daniel S. (2012).

자살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12) 수사 중에 발생하는, 수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속에 발생하는 피조사자나 범죄자들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 연구는 피조사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자료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밝혀내는 경험적 연구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에 나타난 현상들을 연구의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여 자살이 발생하는 개인적 상황들,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상호작용 과정에 나타나는 상황적요인들, 그리고 뉴스매체에 보도되는 사회적 현상 등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스캔들(scandal)로 자살현상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Trea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irst responder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370-380을 볼 것.

<sup>12)</sup> Wichmann, Cherami, Serin, Ralph, and Motiuk, Laurence L.(2000). Predicting suicide attempts among male offenders in federal penitentiaries. Correctional Service Canada.; Swogger, Marc T., Walsh, Zach, Maisto, Stephen A., and Conner, Kenneth R. (2013).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riminal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doi: 10.1177/0093854813508764; Douglas, Kevin S., Lilienfeld, Scott O, Skeem, Jennifer L., Poythress, Norman G., Edens, John F. and, Patrick, Christopher J.(2008). Relation of antisocial and psychopathic traits to suicide-related behavior among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32:511-525.

# 제3장 ■

#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 제1절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자살사건 발생현황' 자료(<표 3-1> 참조)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사람은 모두 83명에 이르고 있다.

⟨표 3-1⟩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사건 발생 현황

순 번	일자	자살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사건 경위 (범죄 혐의)	관할청
1	2004. 2.	전〇〇	부산국세청 6급	○○여객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검
2	2004. 2.	안ㅇㅇ	부산시장	○○여객 로비 사건	서울중앙지검
3	2004. 3.	남ㅇㅇ	○○건설 사장	인사 청탁 사건	서울중앙지검
4	2004. 4.	박ㅇㅇ	전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및 납 품비리 사건	서울남부지검
5	2004. 6.	0 00	파주시장	전문대 설립 관련 뇌물수수 사건	고양지청
6	2005. 3.5.	함○○	강간 사건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울산지 검 수배 중 검거되어 재기, 구 속된 피의자가 구치소 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 시도, 사망 (2005. 3. 5. 구치소 입소, 자 살 시도, 3. 6. 사망)	울산지검
7	2005. 11.	0 00	국정원차장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서울중앙지검
8	2005. 2.	김〇〇	성폭행사건	43회에 걸친 성폭행범행을 부 인하다가 유전자 감식결과가 나오자 심리적 압박으로 교도 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	경주지청

## 34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순 번	일자	자살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사건 경위 (범죄 혐의)	관할청
9	2006. 1.	강00	경찰관	윤ㅇㅇ사건	서울중앙지검
10	2006. 5.	박ㅇㅇ	서울시 주택국장	ㅇㅇㅇ 사옥 인허가 로비 사건	대검 중수부
11	2006. 6.	김〇〇	마약사범	서울서부지검 구치감에서 목을 매 자살 기도, 병원 치료 중 뇌 경색 등으로 사망	서울서부지검
12	2006. 10.14.	김〇〇 (공무원)	구 〇〇철강 터 중 금속 오염사건	중금속 오염사실을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혐의로 조사받던 피진 정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 살시도 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창원지검
13	2007. 10.	김〇〇 (주점운영)	특수강도 사건	불구속 상태에서 특수강도 혐 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집에 서 목을 매어 자살	서울서부지검
14	2008. 1.	강이이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감사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순천지청
15	2008. 2.	0 00	대출사기사건	사업상 어려움, 공범에 대한 배 신감 등으로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	인천지검
16	2008. 3.	김ㅇㅇ	마약사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기도, 병원 후송, 사망	서울중앙지검
17	2008. 3.	서〇〇 (무직)	횡령사건	내연남이 피의자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후 내연남과 다투 고 강에 뛰어들어 자살	고양지청
18	2008. 5.	홍00	특수강도강간 사건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수사 중 이던 피의자가 구치소 화장실 에서 목을 매어 자살	성남지청
19	2008. 6.	박ㅇㅇ (60세, 무직)	○○기업 비자금 조성사건	휴대폰 등으로 소환통보하였으 나 연락두절되어, 차·자식들에 게 유서4장을 남긴 후 주거지 아파트 7층에서 투신자살	경주지청
20	2008. 7.	김ㅇㅇ	환경사범	태화강 분뇨 투기혐의로 조사 받던 피내사자(분뇨수거업체 대 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 시도 사망	울산지검
21	2008. 9.	이ㅇㅇ (48세, 책임기술원)	○○연구원 연구비 편취 사건	피내사자 출석 시간 연기한 뒤 자살	창원지검
22	2008. 9.	양이이	성폭력사범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 받던 피 의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 살 시도 사망	청주지검
23	2008. 9.	우00	마약사범	수원지검 내 경찰관실에서 목을 매 자살 기도, 병원 후송, 시망	수원지검

##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 35

순 번	일자	자살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사건 경위 (범죄 혐의)	관할청
24	2008. 9.	전OO (공무원)	교육감선거 관련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	천안지청
25	2009. 1.	한O (일 <del>용근</del> 로자)	살인사건	2009. 1. 20.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호프집에 찾아가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복부를 찔러살해구속송치 후 호송출장소 입감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	창원지검
26	2009. 3.	소○○ (조합장)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군산지청
27	2009. 3.	김〇〇 (54세, 〇〇경찰 서 강력팀장)	게임장 단속무마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 소환에 불응 도주 중 렌트 차량 내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	홍성지청
28	2009. 5.	노ㅇㅇ	전직 대통령	박연차 정관계 로비사건	대검 중수부
29	2010. 3.	0 00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홍성지청
30	2010. 4.	송00	마약사범	청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목을 매 자살기도, 병원 후송, 사망	청주지검
31	2010. 4.	고〇〇 (공인회계사)	뇌물수수	회계감사 관련 뇌물수수, 주거 지 부근 이산에서 자살	서울중앙지검
32	2010. 4.	유〇〇 (보건소장)	뇌물공여	승진청탁 명목으로 뇌물공여, 자택 에서 목을 매 자살	청주지검
33	2010. 6.	평〇〇 (방산업체 이사)	횡령	방산물자 대금을 편취, 주거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	서울중앙지검
34	2010. 7.	서〇〇 (회사원)	존속살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2010. 1. 29.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피의자의 부)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너를 이불위에 붓고 불을 붙여 살해 불구속 수사 중 검찰소환 통보받고 부산 소재 금정산 바위에서 투신하여 자살	부산지검
35	2010. 7.	황〇〇 (64세, 농업)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 이던 피의자가 치악산휴양림내 에서 자살	원주지청
36	2010.11.	유ㅇㅇ (경비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차량내부에 연 탄 가스 피우고 자살	포항지청
37	2010.11.	황〇〇 (회사원)	업무상횡령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고 소당하여 심적부담 중 모텔에 서 목매 자살	대구지검

## 36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순 번	일자	자살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사건 경위 (범죄 혐의)	관할청
38	2011. 2.14.	홍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 상해)	- 2010. 12. 2. 변사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 의 뺨을 그어 상해를 가함 - 제1회 공판기일 앞두고 대구 소재 망우공원에서 목을 매 어 자살	대구지검
39	2011. 4.	김〇〇 (〇〇시 체육진흥 과장)	○○시 인사 및 인 · 허가 비리사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 2회 조사(구속영장기각) 피의자 2회 추가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 구속전 피의자심문 예정	대구지검
40	2011. 4.	고〇〇 (공인회계사)	금품수수	공인회계사로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비난 내용의 유서를 남기 고 자살	서울중앙지검
41	2011. 5.	정○○ (30세, ○○소속 프로축구 선수)	○○복권 발행대상 프로축구경기승부 조작 사건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도피 중 호텔에 투 숙하였다가 목을 매고 자살	창원지검
42	2011. 5.	김〇〇 (무직)	마약사범	내사를 받아 오던 필로폰 투약 사범이 주거지에서 자살	울산지검
43	2011. 5.	김〇〇 (양곡판매)	관세법위반	중국산 쌀 원산지 등 허위표시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 자자살	부산동부지청
44	2011. 6.	김〇〇 (법원주사)	인지절취 사건	수사의뢰 대상자 출석요구서발송, 출석일정 조 정중	안산지청
45	2011. 6.	김〇〇 (회사원)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 던 피내사자가 자살	목포지청
46	2011. 6.	주〇〇 (회사원)	강제추행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 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자살	김천지청
47	2011. 6.	최〇〇 (48세, 〇〇태권 도협회 전무이사)	○○태권도협회 업무상횡령 사건	변사자는 당청의 태권도협회 공금 유용 수사로 인해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자살	김천지청
48	2011. 8.	정〇〇 (회사원)	업무상횡령	주유대금 횡렴 혐의, 고향집 인 근 산에서 제초제 음독하여 자살	대구서부지청
49	2011. 9.	김〇〇 (농업)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 위반	허위의 소유권확인서를 발급받 아 이전등기, 분쟁 상대방과의 불화를 비관하여 자살	밀양지청
50	2011. 9.	신〇〇 (64세, 〇〇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조정 경기장 입찰 비리 사건	추가 범죄사실 발각 우려하여 그라목숀(제초제) 마시고 자살 한 것으로 추정	충주지청

##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 37

순	일자	자살자	관련 사건	사건 경위	관할청
번	길시	성명(신분)	선단 사건	(범죄 혐의)	선일성
51	2011. 10.10.	변〇〇 (무 직)	아동(11세, 여) 대상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를 위해 3일 전 소 환통보 하였으나 조사예정시각 직전 "금일 자살할 예정이라 소 환 불응하겠다"고 검사실에 통 보한 후 변사체로 발견됨	서울중앙지검
52	2012. 2.	김〇〇 (무직, 남, 49세)	마약사범	울산구치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 기도, 병원 후송, 시망	울산지검
53	2012. 2.	지〇〇 (48세, 전 〇〇원 전 제2발전소 기계 팀장)	○○원전 납품비리 사건	피내사자 금품수수 혐의로 소 환통보를 받은 후 소환에 응하 지 않은 채 모텔 객실 출입문에 목욕 가운 허리끈으로 목을 매 자살	부산동부지청
54	2012. 3.	김〇〇 (무직)	강도상해	강도상해 등으로 구치소에 수 감중 이던 피의자 자살	서울중앙지검
55	2012. 5.	장이이 (무직)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음독자살	목포지청
56	2012. 5.	권OO (55세)	보험금편취	보험금편취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소재불명후 엽 총 이용 자살	제천지청
57	2012. 7.16	김〇〇 (은행지점장)	횡령	○○저축은행 회장의 ○촌 동 생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자살	천안지청
58	2012. 8.	정〇〇 (무직)	강간미수	강간미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이 청구된 피의자가 자살	광주지검
59	2012. 11.4.	문〇〇 (회사원)	성폭력사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판사와 검사에게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유 서를 남기고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 (피의자에 대한 소환 통보 없었음)	서울중앙지검
60	2012. 12.	이ㅇㅇ (무직)	강간	장애인 강간사건으로 조사받던 피의자 자살	홍성지청
61	2012. 12.	윤〇〇 (건설사대표)	뇌물공여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통 지받은 피의자 자살	안동지청
62	2013. 1.	이ㅇㅇ (교사)	강제추행	○○중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기슴과 엉덩이를 만 져 강제 추행한 피의자가 검찰 불구속수사 중 자택에서 자살	안산지청
63	2013. 3.	박ㅇㅇ (무직)	사기	4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2회 대질후 검찰 불구속 수사 중 자살	서울중앙지검

## 38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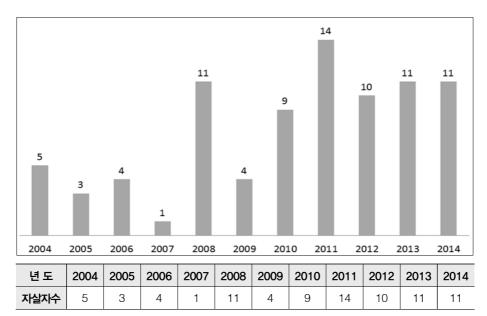
순		자살자		사건 경위	
번	일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범죄 혐의)	관할청
64	2013. 5.6.	박ㅇㅇ (피해자)	강간치상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중 강간치상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목을 매 자살	대구지검
65	2013. 6.	김〇〇 (〇〇국제중 교감)	○○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피고발인 조사 2회	서울동부지검
66	2013. 6.	박〇〇 (전부안군부 군수)	부안군공무원근무 성적평정서류조작 의혹사건	참고인조사 2회 피의자조사 1회	전주지검
67	2013. 7.	김OO (PD)	'신의' 드라마 제작관련 금품비리사건	피의자조사 1회 구속영장 청구 ※ 구속전 피의자심문 예정	서울중앙지검
68	2013. 8.	김〇〇 (50세, 전 국회의 원)	㈜이이이이이이 분식회계 감사관련 청탁 사건	피의자조사(임의출석) 4회 자백 후 다음날 임의출석 피의자 조사 예정	서울남부지검
69	2013. 9.16.	송〇〇 (회사원)	강제추행사건	15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조 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상공개 등을 우려하여 주거지 부근 야 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	부천지청
70	2013. 10.29.	권〇〇 (자영업)	사기	보험금 편취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주거 지 인근 모텔에서 자살	창원지검
71	2013. 11.13.	배ㅇㅇ (자영업)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 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인 근 해상에서 자살	진주지청
72	2013. 12.	장이이 (무직, 남, 31세)	마약사범	성남지청 마약수사관실에서 조 사받던 중 마약류를 삼켜 자살 기도,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	성남지청
73	2014. 2.22.	박ㅇㅇ (무직)	살인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았던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자살	인천지검
74	2014. 3.6.	허〇〇 (기자)	사기등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던 피 의자가 주거지에서 자살	순천지청
75	2014. 3.14.	박〇〇 (회사원)	강간 사건	외사촌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 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군산지청
76	2014. 3.19.	이ㅇㅇ (유통업)	사문서위조 등	처(妻)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승용차 안에서 자살	광주지검
77	2014. 4.	조〇〇 (무직, 남, 38세)	마약사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주거지 부근의 차 안에서 번 개탄을 피워 자살	서울중앙지검

순 번	일자	자살자 성명(신분)	관련 사건	사건 경위 (범죄 혐의)	관할청
78	2014. 6.4.	최〇〇 (불상)	사기	고소인과 대질조사 예정이었던 피의자가 불상지에서 자살	서울중앙지검
79	2014. 6.	이〇〇 (51세, 한국도시철 도 시설공단 정보 통신처 무선통신 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통신시설 공사 납품비리 사건	구속전 피의자신문 예정	대전지검
80	2014. 7.	김〇〇 (55세, 〇〇대 의대 교수)	논문대필 사건	피의자 소환 통보 전 지살	전주지검
81	2014. 7.	김〇〇 (57세, 전 한국도 시철도시설공단 이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 선정 비리 사건	관련 상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남기고 자살	서울중앙지검
82	2014. 7.	이ㅇㅇ (49세, ㅇㅇ컨설 팅㈜ 대표업무 수행)	대한주택보증 전 사장 금품수수 사건	소환 조사 전 자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 남김 우울증으로 4차례 자살 시도	서울중앙지검
83	2014. 7.	박〇〇 (51세, 현 해양수 산부 본부 사무관)	뇌물수수	피의자 소환 불응하여 체포영 장 발부 후 소재파악 도중 여관 에서 자살함	제주지검

주1. 홍일표(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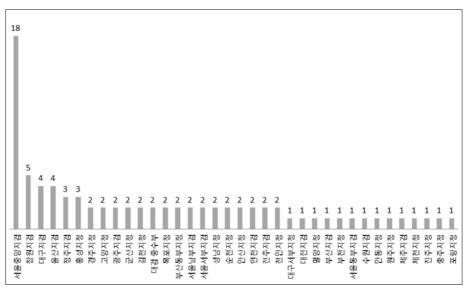
위의 자료에서 피조사자 자살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4년 5명이었던 수사 중 자살자는 2005년 3명, 2006년 4명, 2007년 1명 등 비교적 낮은 수치로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부터는 11명,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이 자살했으며 2014년에는 7월까지 벌써 11명이 자살하는 등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참조). 피조사자의 자살자수를 지금은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비롯한 전국 지검 및 지청으로 집계할 경우 수사 인원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원지검 5명, 대구지검과 울산지검이 각각 4명, 청주지검과 홍성지청이 각각 3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 40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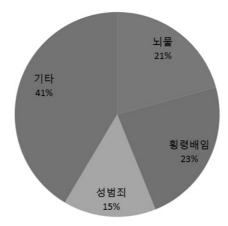
주1. 2014년도는 7월까지의 집계

[그림 3-1] 연도별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



[그림 3-2] 전국 지검 및 지청별 피조사자 자살자 수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가 자살한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령배임이 23%로 제일 많았고, 뇌물범죄 21%, 성범죄 15%로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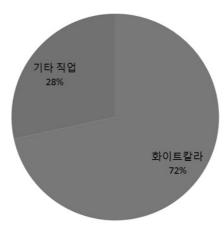
[그림 3-3]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가 자살한 사건의 범죄유형

범죄유형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상 나타난 전체 자살자 중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그림 3-5] 참조)한 화이트칼라<sup>13)</sup>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이르고 있다([그림 3-4] 참조).<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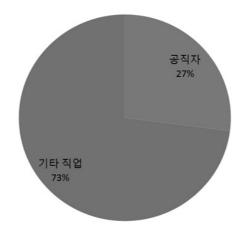
<sup>13)</sup> 화이트칼라는 블루칼라로 일컬어지는 육체노동자에 반대되는 집단이다. 육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실제 상품생산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에 화이트칼라로 분류될 수 있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21&cid=40942&categoryId=31846)최초로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개념을 사용한 서덜랜드의 구분에 의하면 화이트칼라는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명예감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화이트칼라가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모두 높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직, 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화이트칼라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Sutherland, Edwin H(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12.]

<sup>14)</sup> 공직자의 비율은 전체의 27%이다.

#### 42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그림 3-4]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피조사자의 화이트칼라 비율



[그림 3-5]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피조사자의 공직자 비율

## 제2절 분석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사건 현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자리 수

를 유지하던 피조사자의 자살자 숫자가 2011년 이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며 중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008년 11명으로 두 자리 수의 자살자가 발생하였다가 2009년과 2010년 다시 한 자리 수로 돌아섰고, 2011년부터 다시 두 자리 수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강화된 이후 피조사자의 자살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둘째, 전국 지검 및 지청 별 피조사자 자살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두 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 검의 경우 오차 범위 밖의 많은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 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비교할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달리 어떠한 원인이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일반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잘 넘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경우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정신적으로 더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제4장 ■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이 반드시 화이트칼라 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화이트칼라 범죄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특징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는 1939년 서덜랜드(Edwin Sutherland)가 미국사회학회 회장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서,<sup>15)</sup>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하였다.<sup>16)</sup> 사회적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sup>17)</sup>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와 명

<sup>15)</sup> Edwin Sutherland(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2.

<sup>16)</sup> 서덜랜드가 1939년 미국사회학회 회장 연설에서 밝힌 내용은 화이트칼라라는 계층적 지위가 반드 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반대쪽 선상에 있는,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소득수 준도 높은 사람들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면 화이트칼라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존경 과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드시 옷을 잘 입고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Edwin Sutherland(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940), p.4.

<sup>17)</sup>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과 그 원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서덜 랜드의 개념정의에 대해 그 후 1990년대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 왔다. 이

망, 혹은 신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느 집단인가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 수이다.<sup>18)</sup>

이 개념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서덜랜드가 범죄학에 기여한 바는,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들 화이트칼라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 또한 분명 여타의 범죄가 같이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빈곤이나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후 많은 학자들은 최근까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에 대한 논쟁,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과 통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범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인 비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의 차원에서 구조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1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사회나 기업 등 공공조직에 있어서 의사의 결정, 집행, 조직의 운영 등에 있어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온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을 모니터링, 평가, 제재, 통제하는 기제가 매우느슨하게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빅 스캔들 (big scandal)"은 대체로 조직차원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온존하는 대부분의 직업범죄 혹은 화이트칼라 범죄들은 범죄와 부패에 취약한 조직의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범죄(organized crime)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러한 논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통제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화이트칼라 개념과 이론적 접근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보면, 서덜랜드가 말한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집단을 의미하는지, 행위가 아닌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을 정의한 것 등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음을알 수 있다. [e.g., Geis, Gilbert (1992). White-collar Crime: What is it? In Kip Schlegel and David Weisburd (eds.), White-collar Crime Reconsiered.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Braithwaite, John 1985; Shapiro 1980, 1990; Levi 1987). Dwight C. Smith Jr. Paragons, pariachs, and pirates: A spectrum-based theory of enterprise Crime and Delinquent. 26:358-386 (1975).]

<sup>18)</sup> 연성진/김지선(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30쪽. 19) 여성지(1998) 권려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반아 하국형사정채여구워 49\_55쪼 여성지

<sup>19)</sup> 연성진(199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55쪽.; 연성진/김지선 (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5~48쪽.

## 제2절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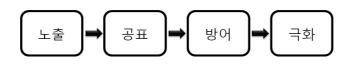
수사 중에 자살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는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고, 이것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뉴스매체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표되고,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과 방어의 과정을 거쳐 결국 사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스캔들(scandal)로 극화(dramatization)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상을 뒤흔든 사건들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캔들"은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규범을 어긴 일탈행위 그 자체를 일컫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일반인, 언론매체, 형사사법기관 등의 반응(reaction)을 가리키기도 한다. 20)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 사건들을 모두 스캔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정의한 스캔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사건이 지닌 사회적 여파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 스캔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린 행위란 점에서 그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반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도, 강도, 성범죄, 살인, 방화 등 일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범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당연히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이 큰 범죄 사건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띠며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자신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 파악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깨뜨린행위들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건들은 범죄자의 직업상 일어나는 일상적 업무활동의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행위들이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Sherman은 이런 사건들은 하나의 사회적 스캔들(scandal)로 보고 범죄사건이 겉으로 노출(revelation) → 공표(publication) → 방어(defense) → 극화(drama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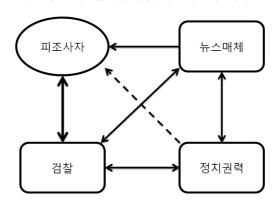
Sherman, Lawrence W. (1978). The Mobilization of Scandal.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59-60.

되는 과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sup>21)</sup> 이 과정과 구조 속에는 이해관계와 관심을 달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건의 극적 효과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를 갖게 함으로써 하나의 스캔들을 통해 행위자들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sup>22)</sup>



[그림 4-1] 사회적 스캔들의 과정

자살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똑같은 원인과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이트칼라 범죄들을 보면, 피조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있으며 범죄가 표면으로 노출된 이후부터 이와 같은 주체들이 상호작용 속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는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경로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각 행위주체들의 행위의 정도와 상호작용의 수준은 사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겠지만 특히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던 대형 스캔들의경우 이와 같은 분석들이 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림 4-2]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 및 경로

<sup>21)</sup> Sherman, Lawrence W. (1978). Scandal and Re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특히 이 책 pp.66-91을 볼 것.

<sup>22)</sup> 검찰 수사 중에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사건을 제보 혹은 제보하는 사람이 있으며, 사건의 피의자 및 참고인, 그리고 이를 절차를 밟아 수사, 기소, 재판하는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이 있으며 이 전 과정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매체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은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때로는 이해관심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 제3절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 1. 검찰수사와 피조사자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내는 과정이다. 즉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sup>23)</sup> 범죄수사는 다시 대물적 수사<sup>24)</sup>와 대인적 수사<sup>25)</sup>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85%가 대인적 수사라고 보고하고 있다.<sup>26)</sup>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수사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인적 수사는 문답 형식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며, 조서의 형태로 현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27)</sup>

문제는 조서 중심의 대인적 수사의 경우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술내용이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적절치 못한 언어나 질문을 사용했는지, 또는 부당한 심리적 압력이나 물리력을 가했는지를 조서를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조사과정의 인권 침해 시비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28)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

<sup>23)</sup>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155쪽.

<sup>24)</sup>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이나 흔적을 수집, 분석하여 범죄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를 말함. [김종률(2002), 수사심리학, 학지사, 16쪽]

<sup>25)</sup> 범죄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 수사를 말함. [위의 책, 16쪽]

<sup>26)</sup> Garido, E., Masip, J., & Herero, C. (204). Police oficers; credibility judgments: acuracy and estimated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4), 254-275.; 전우병(2010), 수사실무상 진술 취득 과정에 대한 실태연구: 성범죄 조사과정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1쪽.

<sup>27)</sup>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백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 이를 달성했느냐가 조사능 력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전우병(2010), 위의 책, 2쪽.]

<sup>28)</sup> 전우병, 앞의 보고서, 2쪽.

는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아직까지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sup>29)</sup>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무리한 수사 관행이 피조사자의 자 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언론과 피조사자

현행법상 범죄보도의 정의는 범죄에 관련된 사실적 주장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범죄에 관련된 사실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써 범죄의 수사착수, 체포, 압수 및 수색, 구속에서부터 기소단계까지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라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 관련 기사도 포함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전의 내사단계나 수사전에 보도가 선행되어 보도가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경우도 포함하다.<sup>31)</sup>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범죄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범죄혐의자나 그 가족 등 범죄관련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한번 침해된 인권은 사후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사법의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또한 이를 감시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범죄혐의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32)

<sup>29) &</sup>quot;자살 공무원 유서에서 드러난 검찰의 현실" 뉴시스 2011-04-05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5051

<sup>30)</sup>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항에서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31)</sup> 손창렬(1987),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쪽.; 김태희 (2007),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된 제문제 고찰, 법무연수원, 주8 재인용.

<sup>32)</sup> 언론은 오늘날 신문, TV등의 기존의 언론매체이외에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과거보다 더욱 영향력이 커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공익적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고 상업적 이윤이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

구체적으로 범죄보도의 부정적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범죄보도는 개개의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전체상을 오도하기도 한다. 둘째로 범죄보도는 범죄자 또는 사건주변 인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셋째로 범죄보도는 간혹 오보를 냄으로써 당사자에게 큰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셋째로 범죄보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기사가보도되면 피의자나 공범의 신병확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다섯째로 범죄보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시각만을 일반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다.33)

#### [사례]

조선일보가 자사 인터넷판 조선닷컴에 이어 조선일보에도 사진을 잘못 게재한 데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9월 3일자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성폭행범 고종석 얼굴사진 잘못 게 재 피해 본 분과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일부 지역에 배달된 본지 9월 1일자(53판) A1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제하의 사진 중 '범인 고종석의 얼굴(두 사진 중 위사진)'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사진으로 피해를 본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중략)

앞서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톱 기사로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제목 기사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언론은 여러 명이 어울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설명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 고종석'이라며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고종석의 얼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네티즌은 포털 게시 판을 통해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며 "신문 1면으로

다. 이러한 언론의 상업성에서 기인하는 역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 다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33)</sup> 김태희, 앞의 보고서, 9~10쪽.

퍼졌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뉴스기사, 댓글 등에 친구 사진이 퍼져 있다. 친구는 개그맨 지망생인데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몰라 경찰에 문의하러 갔다"며 "어 떻게 해야할지 몰라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고 사진 주인공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은 친구가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인데 고종석의 동생이 퍼 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파문이 일자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이날 오후 조선닷컴에 사 과문을 게재했다.

[출처: 뉴스엔 2012-09-03 14:40,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 9031437442341]

위의 사례는 범죄보도의 오보에 의한 피해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범죄보도의 경우에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대 영향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가 진정한 범인이라는 공식에 따라 일단 피의자로 보도된자에 대하여는 총체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하지만 개인의명예는 그가 진정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하는 인격권이므로 아무리 범죄보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명예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보도의 오보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 범죄보도의 오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 없이 전문에의한 추측보도와 같은 미확인보도, 취재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보도하는 왜곡보도, 사건당사자 일방만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편파보도, 사실을 허위로 날조하여 보도하는 허위날조보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오보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나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써 오보의 문제가발생하게 되는데 한정된 취재인원으로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현행 언론사의 운영체제상 정확성에 대한 문제소지가 항상 남아있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른 첨단과학이나 의학 그리고 범죄분야에 대한 언론의 전문지식 부족은 심도 있는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오보를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오보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과잉활동을 재촉하거나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도 없지 않다.34) 언론이 지난 막강한 영향력과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그것에 대한 높은 신

로도를 감안할 때 오보가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언론에서는 하찮은 기사로 치부하는 단신의 경우에도 막상 당사자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이후에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일단 보도된 기사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보도는 범인의 가족 또는 주변인물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오보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다.

## 3. 정치권력과 피조사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신뢰(trust)를 받아야 할 공직자나 성공한 기업인 등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먼저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들의 활동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결단 혹은 통치의 산물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범죄내지 부패범죄에 대한 통계추세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2년 사이에 대체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35)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만약 피조사자가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36)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인식을 배경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해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이것이곤 좌절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살원인에 따른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의 자살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사정과 반부패 통제정책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도

<sup>34)</sup> 김태희(2007), 앞의 보고서, 15쪽.

<sup>35)</sup>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연성진(2007), 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2004-2005 년,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115-146쪽) 역대정부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 임기 이듬해에 공무원범죄율과 징계율이 최고치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도 정부가 바뀌고 공직자들이 비리에 많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사정드라이브와 정권의 정통성 강화 차원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up>36)</sup> 이러한 인식으로는 왜 유독 자신들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표적수사,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보 복수사, 짜맞추기 수사 등으로의 인식을 상정할 수 있다.

없지 않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의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으로 인하여 사법당국이나 공산당 사정당국 관리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자신과 관련되는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조사를 받을 경우 공직자 혹은 공기업 임원들이 의문의 자살을 하는 사례가 2012년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37)</sup> 중국정부의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는 2013년에만 182,000명의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Bloomberg Businessweek는 2013년 54명의 공무원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중 23명은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공산당 간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수사 중에 있는 공직자들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제4절 자살원인에 따른 자살의 유형

물론 피조사자가 상기와 같은 과정과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든 피조사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개인차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범죄나 일탈행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그 개인의 심리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을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단위로 보는 미시적 접근방법에 불과하다. 수사 중 자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제를 살펴보면 개인이 수사가 시작된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원인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에게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객관적 문제상황은 개인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38) 즉 여러 가지 문제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자살자들이 겪었던 문제상황 속에서 자살에이르는 과정에는 자살자의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가 존재하고 이것이 곧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9) 따라서 자살이라는 행위는 문제상황에 처해있

<sup>37)</sup> The Economist 2014.6.28.

<sup>38)</sup> 박형민(2008), 앞의 논문, 5쪽.

는 자신이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단순 반응이 아니라 자살자가 의 식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한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sup>40)</sup>

이와 같이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살자의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살원인에 따라 자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sup>41)</sup>

## 1. 회피형 자살

회피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고 있으면 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한 방식으로 자살이라는 도피처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사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방파제 옆 해안도로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계장 전 ㅇㅇ씨(52세 6급)가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차량 밖 물통 안에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당신 몸도 아픈데 미안하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숨진 전씨는 이날 동생과 직장동료들에게 "오늘오후 4시까지 집으로 모여달라"고 전화한 뒤 집을 나와 오후 4시경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네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미안하다. 지금 있는 곳은 울산 서생 간절곶 등대 인근"이라고 말했다. (밑줄은 연구자가 삽입함. 이후 동일함)

[출처: 동아일보 2004-02-03 19: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24616]

#### 2. 이해형 자살

이해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나 선택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이해

<sup>39)</sup> 위의 논문, 81쪽.

<sup>40)</sup> 위의 논문, 81쪽.

<sup>41)</sup> 아래의 분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과 관련한 국내외적으로 관련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자살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살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 유형을 추정한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박형민(2008), 위의 논문]에서 분류한 자살의 유형을 인용/참조하였다.

를 구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 이라 할 수 있다.

#### [사례]

안ㅇㅇ 부산시장은 비리 혐의에 사회적인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그의 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부산으로 재이감된 3일 오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서는 몇차례 지웠다 다시 쓴 것으로 미뤄 심적인 갈등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안 시장이 부인에게 남긴 유서 전문이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정말 죄송하오. 모든 짐을 당신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희망없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 사회적인 수모를 모두 감내하기가 어려워 오늘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직접적 인 책임을 지고저 합니다. 다시는 나와같은 공직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도저히 헤 어날 수 없는 인격파탄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발 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가 오늘의 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 록 서울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도시로..."

[출처: 오마이뉴스 2004-02-06 1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42143]

## 3. 해결형 자살

해결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해결형 자살은 회피형 자살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회피형 자살은 자신의 문제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해결형 자살은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호텔 쪽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숨진 정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 쪽은 이날 0시50분께 혼자 투숙한 정씨가 퇴실 시각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문을 따고 들어가 목을 매 숨져 있는 정씨를 발견했다. 정씨의 주검 옆에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의 당사자로서 부끄럽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들은 친구들인데 내 이름을 진술하지 않는 것은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모두 내 책임이다. 내가 시킨 것이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한겨례뉴스 2011.05.30 20:5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0444.html]

## 4. 배려형 자살

배려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나, 그 고통이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다.

#### [사례]

로비 사건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건물 증축과 관련된 종합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이미 본인이 현대자동차나 설계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괴롭혀서 항복을 받아낼 욕심으로 저와 돈 거래한 처남 은 물론 처남과 돈거래한 사람까지 계속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검찰에서는 본인은 물론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앙수사부와 힘들게 싸워야 하나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사법부가 공정하다 해 도 중수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됨.

주변의 친지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고 평생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서울시청 동료, 후배들의 명예를 중히 여기며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렵니다.

[출처: 쿠키뉴스 2006-05-15 18: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1&oid=143&aid=0000026271]

### 5. 비난형 자살

비난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한 사람이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일방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다.

#### [사례]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공사과정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최근 회사의 매출 및 매입 관련 허위계산 서를 발행한 혐의(조세처벌법 위반)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공금횡령), B씨에게 추가로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26일 오후 3시 조세처벌법 및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유서로 보이는 A4용지 1장에 남긴 글에서 해당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담아, 강압수사 여부 등에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지금 감방에 있는 사람들(공무원 B씨와 뇌물공여자를 지칭) 1억원은 뇌물이 아니다. 진실은 검사님께서 이미 잘 아실 것이다. 풀어달라. 사람 망하게 하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요지의 글을 남겼다.

[출처: 매일신문 2012.12.27,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 news\_id=67949&yy=2012#axzz3N59RJ1nX]

## 6. 각인형 자살

각인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죽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한 사람이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에게 강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다.

#### [사례]

최ㅇㅇ 경찰청 차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사람인 수행비서 강ㅇㅇ(40) 경위의 자살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했다. 강 경위가 자살로서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좀더 조사 결과가 나와 야 하겠지만 일단 자살 동기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유서에 '검사없는 세상으로

가자'등 검찰에 대한 적의(敵意)가 묻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비열한 수준의 언론플레이를 펴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의 핵심축이었던 최 차장 최측근의 자살은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06-01-21 20: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201397]

## 7. 고발형 자살

고발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죽음을 통해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한 사람이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구체적인 비행이나 범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다.

#### [사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청 김 o o (54 세, 5급) 씨가 유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검찰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김 씨 유족들이 공개한 A4 용지 25장 분량의 유서에는 <u>"검사가 손찌검을 하고, 뺨 3대를 때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수사관들이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고 적혀 있다. 유서에는 또 자신은 친한사업자에게 승용차 1대를 빌려 탄 것 외에는 결백한데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u>

김 씨 유족들은 이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강압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신문 2011.04.06.,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460&yy=2011#axzz3N59RJ1nX]

## 8. 탄원형 자살

탄원형 자살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권력을 가진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권력자의힘을 빌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62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 [사례]

"제가 정보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였으나 그중에서 진정성이 있던 아이들은 세계일보 ㅇㅇㅇ과 조선일보 ㅇㅇ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BH 국정 농단"은 저와 상관 없고 단지 세계일보 ㅇㅇㅇ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제가 이런 힘든 지경에 오게 되고 조선일보 ㅇㅇㅇ은 제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중략) 언론인 들어라.

<u>훌륭하신 분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활하시죠.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의</u>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계일보 2014-12-15 13:5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15/20141215002429.html?OutUrl=naver]

### 9. 정신장애형 자살

이상에서 열거한 자살의 유형 외에도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신장애형 자살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절망의 표현으로 우울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sup>42)</sup>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약 95%)이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43)</sup> 이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지 사람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높은데, 우울증환자의 15%, 정신분열병 환자의 10%, 만성알코올중독자의 24%, 난폭한 충동적행동을 하는 사람의 25%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44)</sup>

#### [사례]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중략)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3-03-2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644]

<sup>42)</sup> 민성길(2006), 최신정신의학 제5판, 일조각, 774쪽.

<sup>43)</sup>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으로 80%, 정신분열병 10%, 치매 또는 섬망 상태가 5%이다. [위의 책, 775쪽]

<sup>44)</sup> 위의 책, 775쪽.

## 제5절 소결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조사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조사자로 하 여금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많은 피조사자 중에서 일부만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조사자가 겪는 문제 상황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자살자 들이 겪었던 문제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 이 남아있다.45) 즉 문제상황에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피조사자의 주관 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뇌물비리, 인사비리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문제상황이 자살자들의 객관적 상황이라면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데는 문제상황에 대한 자살자들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상황 자체가 개인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 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다.40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들이 자신이 처 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필 요가 있고, 이러한 개입의 전제로서는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 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sup>45)</sup> 박형민(2013), 앞의 논문, 63쪽.

<sup>46)</sup> 위의 논문, 63쪽.

## 제5장 ■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

##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검찰 수사 중 자살로 이어지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체적으로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캔들의 성격을 띠기가 쉽다. 이러한 범죄사건들의 처벌에 있어서 때로는 범죄행위 이외의 다른 사회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Benson과 그 동료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기소 여부, 혹은 처벌의 강도는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본다. 47) 따라서 부패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에는 일반 범죄(street crime)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재량권이 더 발휘되며 또한 수사 등에 있어서도 세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먼저 피조사자들에 대한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자들과는 다른 화이 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엇보다 피조사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수사절차를 통해서 범죄를 파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가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스캔들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혐의를 캐기 위해 피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

<sup>47)</sup> Benson, Michael L. et al. Community context and the prosecution of corporate crime. Ch.11, Kip Sc-hlegel & Davis Weisburd(eds.) (1992). White-Collar Crime Reconsidered. Boston: Northeaste r Unive-rsity Press. p.269 이항.

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부담을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등의 배려형 자살이나 회피형 자살, 해결형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공포를 더 심하게 느끼고 우울증 등과 같은 급성정신장에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48) 정신과의의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엘리트들은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쉽게 패배자로 낙인찍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엘리트 중년 남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실행한 사람의 거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병이 10%, 치매나 섬망이 5%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49) 즉 뇌물비리, 인사비리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문제상황 자체만으로 직접 자살한다기보다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고통 받으며 우울증이 생겨 충동적으로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우울증을 포함하여 정신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할 소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 자살로 마직막 명예 지켜

값으로 따져 1개에 1달러가 채 안되는 2개의 장식물이 미해군참모총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 국방부는 16일 제레미 마이크버다 해군참모총장(57세 대상)이 이날 오후 워싱턴의 해군 정비창내 자택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자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현장에 남긴 유서 2통의 내용으로 보아 그의 자살은 '전투V'라는 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투V'는 대부분의 미군 영내 매점에서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는 V자 모양의 조그만 핀으로 보통 다른 훈장과 함께 수여된다. 정신훈장은 아니지만 실제 전투에

<sup>48)</sup> 주간경향 1107호 2014.12.3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3171711441&pt=nv 참조.

<sup>49)</sup>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2005), 신경정신의학 제2판, 396쪽.

<sup>50)</sup> 위의 책, 396쪽.

참여한 군인들에게 훈장과 함께 이 '전투V'핀을 달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 버다 제독은 17세때인 56년 해군 사병으로 입대, 38년만인 94년에 해군 최고의 자리에 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이제까지 16개의 훈장을 받았다. 그는 수년전부터 월 남전때 받은 2개의 훈장 위에 이 핀을 꼽고 다녔는데 지난해부터 그가 과연 '전투 V'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버다 제독이 자살한 이날에는 이 문제와 관련, 뉴스위크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다. 당초 인터뷰는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돼있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2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이날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기로 돼있던 버다 제독은 갑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며 집무실을 떠나 자택에서 자살을 결행한 것이다. 뉴스위크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버다 제독은 그의한 보좌관에게 "자 이제 그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군"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안보통신이라는 군관련 전문통신이 입수한 그의 훈장사유서에는 그의 전투지역 근무는 인정했으나 그가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며 따라서 '전투V'핀을 수여받아야한다는 구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수여되지 않은 영예를 과시하고 다닌 셈이 된 것이다.

그는 유서에 "나는 나름대로 그것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나의 이 정직한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남겼다. [출처: 1996년 5월 18일 경향신문 6면]

위의 사례는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얼마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담당자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전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조사과정에서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관을 지정하여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검사와 경찰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일본의 경우 피조사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살의 우려가 있는 피조사자의 경우 신병의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거나,<sup>51)</sup> 또는 귀가 조치 시에도 검찰직원이 자택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족에게 현재의 심리상태를 알리고 피조자사에 대한 보호와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 자살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단순히 수사를통한 범죄혐의 사실의 입증만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조사자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들이 자살할 가능성이얼마나 있는지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살가능성 척도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중에 작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자살위험성 척도들은 기존 척도들을 활용한 것인데, 이들이 검찰의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 척도 중에는 범죄자들에 대한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 중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중 적정한 시점에 피조사자로 하여금 다음의 평가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1>, <표 5-2> 참조). 피조사자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격유형 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조사자가 피조사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조사에 있어서 래포(rapport)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up>51)</sup> 우리나라의 검찰실무에서도 피의자를 신병을 조속히 처리하여 구속하는 방법이 피의자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사를 하다가 혐의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 긴급체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 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피의자 조서를 받고 일단 돌려보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검사는 전자의 방식을 썼지만, 최근에는 긴급체포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후자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피의자의 자살을 우려해 체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경우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사 도중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자니 자살의 우려가 있어 두렵고, 자살을 막자니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표 5-1〉 자살위험성 평가척도(1)-조사자 기입52〉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최근(혹은 과거) 심리치료/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배우자나 가족/친척을 떠나보낸 적이 있다

현재 법적 사건 등 중대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음주나 마약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조사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살 시도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표 5-2〉 자살위험성 평가척도(2)-피조사자 기입<sup>53)</sup>

나는 우울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편이다

과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어려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족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있어도 식욕을 잃지 않는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잠은 잘 자는 편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는 한 나는 아무리 힘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한다

<sup>52)</sup> Wichmann, Cherami, Serin, Ralph, and Motiuk, Laurence L. (2000). Predicting suicide attempts among male offenders in federal penitentiaries. Correctional Service Canada, Research Branch, Corporate Development. Perry, Amanda E., Marandos, Rania, Coulton, Simon and Johnson, Mathew (2010). Screening tools assessing risk of suicide and self-harm in adult offende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4: 803-828 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이 척도는 수 사관이나 검사가 평가할 수 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sup>53)</sup> Perry (2005)를 바탕으로 적절히 수정한 것으로서, 피조사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 72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 〈표 5-3〉자살위험성 평가척도(3)─피조사자 기입<sup>54)</sup>

화가 날 때 물건을 집어 던진다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 나쁜 일들을 자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없어져도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계속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 기댈 친구가 하나도 없다

## 제2절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수사는 대부분이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사실을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측과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해명하고 부인하려는 피조사자의 상반되고 대립되는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경우 피조사자가겪는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집한 다양한 혐의사실의 단서들로부터 피조사자가 감추려고 하는 범죄내용들을 집요하게 캐내어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55)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의 전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도 하

<sup>54)</sup> Suicide Probability Scasle: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에서 발췌함. 응답범주는 "1. 전혀 혹은 거의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상당히 자주 그렇다," "4. 항상 혹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이다.

<sup>55)</sup>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이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사 경험 이 많지 않은 검사들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50 심층면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에 이와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찰수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검사나 검찰수사관들 은 자체적인 수사메뉴얼과 엄격한 교육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면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검찰 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적 압박감이나 불안심리,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피조사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 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곤경에 처한 피의자와 검사와의 관계 속 에서는 실제로 아래 사례에서 자살한 피조사자의 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 [사례]

A부장님, B검사님

미안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도 했으나, 여기까지 오면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부장과 B검사를 대하면서 참 정의롭고 열심히 하는 검사를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자칫 누가 될 것 같아 이 글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윤 국장과 그 가족에게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저의 속죄의 마음을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의 행방을 밝히고 나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고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벅찬 절망감만 있습니다.

밝힌들 내 명예와 내 처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 부질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난번 제 사건(2009년末 의원직 상실된 단국대 관련 배임수재 건)으로 내내 지울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때 억울함에 어떻게든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법 시스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순과 불완전한 점을 겪은 터라지금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무력감, 이꼴저꼴 보기 싫은 회의감만 있습니다.

제가 다 지고 갑니다.

이 시점에 저의 주변과 특히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sup>56)</sup> 아래에 서술한 사례를 참조할 것.

#### 74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정의실현을 위해 정말 불철주야 애쓰시는 A부장님, B검사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2012.8.12 김종률(※김종률 전 의원이 2013년을 2012로 연도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 위의 밑줄은 연구자가 강조함) [출처: 법률신문 2013-03-2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Ontents. aspx?serial=73644]

그러나, 한편으로 대인적 수사의 경우 개인적 성향과 자질에 따라 수사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측이 된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사례]

검찰조사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청 5급 공무원 A(54)씨의 유서가 5일 유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이날 오후 3시40분께 경북 경산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A씨의 동생과 큰아들,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된 A4용지 25장 분량의 유서에서 고인은 검찰조사 내용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유서는 시민, 가족,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나눠져 작성됐다. "누명을 쓰고 있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기록됐다.

특히 검찰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욕설, 폭행,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실명 및 날짜 검사실 방 번호 등과 함께 상세히 기재됐다.

A씨는 유서에서 1일 검찰조사 중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는 협박과 사적인 감정이 담긴 입에 담지못할 갖가지 욕설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같은 검사로부터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뺨과 가슴 등을 맞았고 그 후 유증으로 2일 병원까지 다녀온 사실도 언급하며 검찰이 강압으로 생사람을 괴롭히 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수시관 2명은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냄새가 진동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였고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이하 취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이 현 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지목돼 일부 정치인을 비롯한 지역 인물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며 특정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반면 차량을 수수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허물없는 사이에서 대가 없이 타다 돌려줬는데 도둑 취급받고 있다고 억울한 마음도 기록했다.

A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잘못된 검사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마지막 검찰조사를 받고 힘든 모습을 보였으나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억울한 죽음과 검찰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출처: 뉴시스 2011-04-05 21: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3&aid=0003785051]

수사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인적 수사는 문답 형식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며, 조서의 형태로 현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조서 중심의 대인적 수사는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영상녹화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수사에서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사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 경산시청 간 부공무원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요지의 유서를 남겼다.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경산시 계양동 경산종합운동장 기계실 에서 경산시청 과장 김모씨(54·5급)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 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김씨가 시무실 책상에 "결백한데 억울하다. 욕설 등 강압수사를 받았다. 주 변 사람들이 자신이 한 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여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검찰 수사에 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략)

안ㅇㅇ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김씨가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영상녹화 장비가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아 조사 과정이 녹화된 화면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11-04-05 21: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3&aid=0003785051]

물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 한바와 같이 인권침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이외사에 반하는 영상녹화를 실시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조사가 이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사과정의 인권 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모든 조사과정이 영상 녹화되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의 조사과정까지도 영상 녹화가 필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력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57)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영상 녹화한다면 이러한 영상물은 '본증'은 물론 '피의자의 어떠한 진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나 '피의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자료' 또는 '탄핵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수사기관은 의미 없는 조사(영상녹화)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된다.58)

따라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나 자백 강요 등의 우려 등을 염려하여 조사

<sup>57)</sup> 박흥모(2012),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한 영상녹화의 타당성 검토-", 법학연구 제53권 제4호, 66쪽.

<sup>58)</sup> 박흥모, 위의 논문, 13쪽. 창원지방법원 208.2.12. 선고 207노131 판결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으면 그것은 권리의 행사이므로 즉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중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을 신문하던 경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 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위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논문 주34 재인용.]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위협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강요는 물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된 영상물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9)

결국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더 이상 회유나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니 믿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4)</sup>

한편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8조<sup>(1)</sup>의 주의사항 준수의무<sup>(2)</sup>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등 조사에 있어서 피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권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인 강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면, 개선된 인권교육은 검찰 내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수사실무의 현실과 인권보호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63)

<sup>59)</sup> 위의 논문, 14~15쪽 참조.

<sup>60)</sup> 위의 논문, 15쪽.

<sup>61)</sup>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sup>62)</sup>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up>63)</sup>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으로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만든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 인권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핵심 원칙과 접근법을 작동시키고 활용 2. 인권을 효율적인 법집행과 연결시키고, 인권이 실제 그들이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연 3. 인권과 법집행을 분명히 연관시킬 수 있도록함 4. 학습자의 성취를 지식, 이해도, 가치관, 태도 및 기술의 측면에서 명시 5. 인권훈련프로그램의

##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언론의 범죄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sup>(4)</sup> 이러한 침해가 결 국 피조사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조사자의 자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 [사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빨대'(언론에 수사 기밀을 흘리는 내부 취재원을 뜻하는 은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수사 과정 내내 흘린 것은 단순한 '망신주기'를 넘어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2006년 회갑 선물로 억대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한 TV 뉴스는 대표적 사례.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흘렸다면 나쁜 행위, 나쁜 검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비춰볼 때,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빨대'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는 계속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쟁포로라 할지라도 적장에 대해 이토록 졸렬한 방법으로 모욕을 줘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9-05-24 17:4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450141]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보도와는 달리 범죄보도는 특정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계자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관련 사항과 이에 근거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유죄

질을 평가하고 지속적 개선을 도모 6. 인권을 중진하고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의 진전도를 평가 7.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http://www.osce.org/odihr/93968?download=true

<sup>64)</sup> 범죄보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기사가 보도되면 피의자나 공범의 신병확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특히 피의자와 신변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보도가 피의자 신분의 참고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개인의 사진이나 모습이 범죄보도와 관련되어 공개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 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기 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 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을 정도로 관련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었다. 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가 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공표 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본죄의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진 경우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 의 주체가 되므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 다.65)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도 범죄관련자의 인격보호차 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 저질러져도 언론에 대한 형사책임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다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식, 언론피해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적극적으 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60

# 제4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학자들은 뉴스매체가 범죄를 보도하는 가치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논의한다. 뉴스보도는 범죄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범죄의 정도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해 준다. 이는 곧 기능

<sup>65)</sup> 김태희(2007), 앞의 보고서, 31쪽.

<sup>66)</sup> 위의 보고서, 31쪽.

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심각성과 잔인성을 보도함으로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규범을 강화시키며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일차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범죄자, 그리고 이를 처벌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스매체에 나타난 범죄 사건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다. 매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데올로기, 관행 등에 따라서 사건을 구성하고(construct) 해석하고 설명한다.67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뉴스매체가 공익을 위한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뉴스매체는 범죄와 범죄자들과 관련한 사건들을 보다 "충격적이며 극적인" 모습으로 보도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현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sup>(68)</sup>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범죄보도는 재판에 참석하는 배심원이나 잠재적 배심원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 다른 논의들은 범죄보도는 상업적인 이유로 대중의 저급한 기호에 영합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를 게재하며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준다고 비판한다.<sup>(67)</sup> 실제로 범죄보도 내용을 분석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뉴스보도가 범죄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70)</sup>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언론은 범죄관련사실을 보도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의 경쟁관계 때문에 과장보도, 억측보도나 오보 등이 발생한다. 특히 대형사고나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의 경우

<sup>67)</sup> Chilnall, Steve(1977). Law-and-Order News: An Analysis of Crime Reporting in the British Press. Travistock.

<sup>68)</sup> Young, Jock (1981). Beyond the consensual paradigm: A critique of left functionalism in media theory. In Stanley Cohen and Jock Young (eds.), The Manufacture of News (pp.393-421). Beverly Hills, CA: Sage.

<sup>69)</sup> Ericson, Richard V., Baranek, Patricia M., and Chan, Janet B. L.(1991). Representing Order: Crime, Law and Justice. Toronto: Unniversity of Toronto Press. Fishman, Mark (1981). Crime wave as ideology. In Stanley Cohen and Jock Young (eds.), The Manufacture of News(pp.98-117). Beverky Hills, CA: Sage Publications

<sup>70)</sup> Marsh, Harry L. (1991). A comparative analysis of crime coverage in newspaper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from 1960-1989: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69-79.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수사 내용을 앞질러 가거나 수사와 동떨어진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고, 수사에 관 하여 억측을 양산하여 결국에는 명백한 오보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폭로 중심의 보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내용이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서 80%가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sup>71)</sup> 이렇게 용의단계내지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보도에 치중된 이유는 범죄보도의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sup>72)</sup>

다음으로 폭로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전통적인 개인적 강력범죄들을 보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신종범죄(예를 들면 인터넷 사기 범죄), 재벌기업비리,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범죄유형들은 매우 높은 기사가치를 가지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리 혹은 의혹사건에 대하여 언론은 단발성 보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집이나 기획형식의 심층보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3') 더욱이 최근에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24시간동안 시청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속칭 종편방송)의 등장으로 하루 종일 사건 관련 내용방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회이목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련자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취재기자와

<sup>71)</sup> 김태희(2007), 앞의 보고서, 11쪽.

<sup>72)</sup> 박용규(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156~185 쪽.; 앞의 보고서, 주11 재인용.

<sup>73)</sup> 김태희(2007), 앞의 보고서, 11쪽. 한편 이렇게 정부나 사회의 부정/부패/비리/위선 등을 파헤쳐서 이를 폭로/고발하는 폭로보도의 관행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범죄보도의 정치적 특성이 강화된 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각종 '게이트'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기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소위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안과 중요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언급되고 그것이 확인절차 없이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진국(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쪽, 앞의 보고서 주13 재인용]

사진기자들의 취재경쟁이 치열하고 이 와중에 출석자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인터 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사기관 청사 진입을 강제로 방해하는 등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사선상에 용의자로 추정되 는 사람을 아예 범인으로 단정 보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 로 발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언론은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하면서도 추측성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거나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수사진행경과를 추측하는 취지의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다. 74) 한편 일본 검찰의 수사에 관한 보도관행 또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단한 피의 사실과 인적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 상세한 수사경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기소하지 않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나 정치헌금의 경우라도 수사 개시단계는 물론이고 수사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켜 주고 있다. 75)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언론의 공보 및 보도의실상이 명확히 대비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sup>76)</sup>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개정 2013.7.11. 법무부훈령 제903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부록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준칙은 그 목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sup>74)</sup> 노명선(2010), 검찰의 신뢰확보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80쪽.

<sup>75)</sup> 위의 보고서, 141쪽. 한편, 일본의 검찰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혹이 불거져 나와 곪아 터질 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내사를 하고 있다가 증거수집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면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의혹의 초기단계에서 성급히 수사에 착수하다보니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해명하여야하는 책임까지 부담하고, 잔뜩 부풀어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결과물로 항상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 [위의 보고서, 142쪽.]

<sup>76)</sup> 법무부 보도자료 2009.6.22., "법무부「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참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다(동준칙 제1조).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적용대상 및 시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인권보호의 책무 등의 총칙규정을 비롯하여 수사공보의 기준, 공보의 요건, 공보의 방식 및 절차, 공보의 범위, 초상권 보호, 오보 대응, 수사보안 등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이 수사실무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수사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5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달리 획득할 수 없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조사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의 수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면 피조사자가 답변하는 동안 조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피조사자의 답변을 끊었던 사례수는 전체 60사례중 55사례에 이르고, 조사과정에서 한 번이상의 가로막기가 있었던 나머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체 가로막기수는 조사 1회 당 평균 22.07개(표준편차 35.90)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77)</sup> 또한 조사자와 피조사 자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10점 척도의 평가에서 조 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78)</sup>

이와 같이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의 강압수사<sup>79)</sup>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sup>77)</sup> 전우병(2010), 앞의 보고서, 51쪽.

<sup>78)</sup> 위의 보고서, 79쪽.

<sup>79)</sup> 강압(oppression)은 사전적으로 권위나 권력을 부담이 되거나 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하지 않고 가혹한 취급이나 비합리적 불공정한 짐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에 있어서 고문, 비인간적 모욕적 취급, 폭력의 사용을 포함한다. PACE 1984, s.76(8).

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이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사례]

전 부산시 공기업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략)

윤 전 이사장은 지난 12일 개발제한구역인 스포원에 야구연습장 등을 짓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스포원 직원들이 조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2억7천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지시나 묵인을 했는지 여부를 놓 고 2차례에 걸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이사장은 자살 기도 당일인 26일 검찰에 세번째로 소환될 예정이었다.

요 전 이사장은 이날 부산지검 담당검사와 가족 등에게 특급우편으로 보낸 유서에 서 "이틀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라면서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이미 각본을 짜놓고 수사관이 의도하는 곳으로만 몰고 갔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A4지 30여장 분량의 유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늘 출두하면 각본대로 구속하려 할 것"이라며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무덤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전 이사장을 2차례 소환조사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없었고 조사중이어서 윤 전 이사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바없다."라면서 "윤 전 이사장의 유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음독자살을 기도한 이후였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0-07-28 21: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1&aid=0004400710]

외국의 연구사례에서도 13시간이 넘는 조사 중 피의자로부터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피의자는 300번이 넘게 혐의사실을 부인한 경우 강압수사로 인정된 경우가 있으나,<sup>80)</sup> 조사 중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고 피의자로 하여금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진행 된 1시간여에 걸친 조사는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sup>81)</sup>

따라서 수사기법 상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up>80)</sup> R v Paris (1993) 97 Cr. App. R. 99; [1994] Crim LR 361, CA

<sup>81)</sup> R v Heaton [1993] Crim LR 593, C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6장 ■

결 론

# 제6장

# 결 론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심각한 문제상황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을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과 자살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제상황을 가진 모든 피조사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자살을 선택한 피조사자가 모두 우을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인과 자살 간에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피조사자가 가지 문제상황과 정신질환이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피조사자들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실행하기에 앞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볼 때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을 통제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같이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은, 대별하면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를 들 수 있다. 결국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은 계

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단기 수시과제보다는 피조사자 및 그 가족, 수사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포함하는 보다 큰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피조사자의 자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특히 자살원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기반의 실무를 위한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언론기사와 유서 등을 통한 추론에 근거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점은 피조사자의 자살이 일어나는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다양한 이차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일 것이다. 무엇보다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조사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어도조사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을 포기할 만큼 검이 나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피조사자의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왕배(2010),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김종률(2002), 수사심리학, 학지사.

김태희(2007),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된 제문제 고찰, 법무연수원.

김효창(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제12권 제1호.

남재성(2009), "교정시설내 수용자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교정연구 제44호.

노명선(2010), 검찰의 신뢰확보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2005), 신경정신의학 제2판.

민성길(2006), 최신정신의학 제5판, 일조각.

박용규(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5-2호, 156~185쪽.; 앞의 보고서.

박형민(200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2008), "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 - 1997년~2006년 유서분석과 소통적 자살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형민(2013), "소통방식으로서의 자살." 문화과학, 제74호.

박흥모(2012),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한 영상녹화의 타당성 검토-." 법학연구 제53권 제4호.

법무부 보도자료 2009.6.22.,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오갑현(2005), "자살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신학전망, 제148호.

손창렬(1987),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연성진(199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김지선(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90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연성진(2007). 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 2004~2005년.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이진국(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종선·이윤호(2012), "교정시설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소고." 교정연구, 제57호. 전우병(2010), 수사실무상 진술 취득 과정에 대한 실태연구: 성범죄 조사과정을 중 심으로, 법무연수원.

최병조(2009), "형사피고인 자살의 효과." 법사학연구 제40권.

홍성열(2008), "수형자의 자살 예측." 교정연구, 제40호.

Jamison, Kay Redfield(2004), 이문희 역, "자살의 이해." 서울: 뿌리와이파리.

#### 외국문헌

Braithwaite, John (1985). White collar crim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5.

Chilnall, Steve (1977). Law-and-Order News: An Analysis of Crime Reporting in the British Press. Travistock.

Cohen, Stanley and Young, Jock (1981). *The Manufacture of News*. Beverly Hills, CA: Sage.

Durkheim, Emile (1960)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by George Simpson. New York: Free Press.

Durkheim, Emile (1951[1897]).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Douglas, Kevin S., Lilienfeld, Scott O, Skeem, Jennifer L., Poythress, Norman G., Edens, John F. and, Patrick, Christopher J. (2008). Relation of antisocial and psychopathic traits to suicide-related behavior among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32:511-525.

Durkheim, Emile (1951[1897]).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Ericson, Richard V., Baranek, Patricia M., and Chan, Janet B. L.(1991). Representing Order: Crime, Law and Justice. Toronto: Unniversity of Toronto Press.

Erickson, Kai T. (1966). Wayward Puritan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 New York: Wiley.
- Fishman, Mark (1981). Crime wave as ideology. In Stanley Cohen and Jock Young (eds.), The Manufacture of News. pp.98-117. Beverk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Geis, Gilbert (1992). White-collar Crime: What is it? In Kip Schlegel and David Weisburd (eds.), White-collar Crime Reconsiered.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Garido, E., Masip, J., & Herero, C. (204). Police oficers; credibility judgments: acuracy and estimated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4).
- Haugena, Peter T., Evcesa, Mark, and Weiss, Daniel S. (2012). Trea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irst responder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370–380.
- Levi, Michael (1987). Crsis? What crisis? Reactions to commercial fraud in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Contemporary Crises 11:207-221.
- Marsh, Harry L. (1991). A comparative analysis of crime coverage in newspaper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from 1960-1989: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69-79.
- Perry, Amanda E., Marandos, Rania, Coulton, Simon and Johnson, Mathew (2010). Screening tools assessing risk of suicide and self-harm in adult offende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4: 803-828
- Schlegel, Kip & Weisburd, Davis(eds.) (1992). White-Collar Crime Reconsidered. Boston: Northeaster University Press.
- Smith Jr., Dwight C. (1975). "Paragons, pariachs, and pirates: A spectrum-based theory of enterprise." Crime and Delinquent 26:358-386.
- Sutherland, Edwin H(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12.
- Swogger, Marc T., Walsh, Zach, Maisto, Stephen A., and Conner, Kenneth R. (2013).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riminal

-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doi: 10.1177/0093854813508764.
- Szasz, Andrew (1986).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Political Scandals: A Comparison of Watergate and the "Sewergate" Episode 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ocial Problems 33:202-217.
- Wichmann, Cherami, Serin, Ralph, and Motiuk, Laurence L. (2000). Predicting suicide attempts among male offenders in federal penitentiaries. Correctional Service Canada, Research Branch, Corporate Development.
- Young, Jock (1981). Beyond the consensual paradigm: A critique of left functionalism in media theory.

The Economist 2014.6.28.

#### 인터넷 자료

- 네이버지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57
  123757&qb=6rKA7LCwIOyImOyCrOykkSDsnpDsgrQ=&enc=utf8&section=
  kin&rank=1&search\_sort=0&spq=0&pid=S5C4xsoRR0wssbf7U88sssssssN-33
  8236&sid=VJkIxAoUU0wAAGSLOMY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21&cid=40942&category Id=31846

#### 언론보도

- 경향신문, 2004.03.11. 〈속보〉남상국 前대우건설 사장 투신 자살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0057160
- 경향신문, 2004.04.29. 박태영 전남지사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0064251
- 경향신문, 2013.07.23. '급여 횡령 혐의' 사전영장 김종학 PD 고시텔서 자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32224185&code=940202
- 경향신문, 2013.12.20. 마약사범 검찰조사과정에서 마약 먹고 자살 http://news.khan.

- 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01321561&code=940202
- 경향신문, 2006.06.18. 구치감서 피의자 자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181810221&code=940202
- 경향신문, 2011.04.04. "검찰이 강압수사… 억울" 경산시청 간부 자살 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42149595&code=940202
- 경향신문, 2011.06.20. 경북태권도협회 임원 검찰 수사 중 자살 http://news.khan. 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106202141345&code=940202
- 뉴스원, 2013.06.20. '인사 비리 의혹' 전 부안 부군수 '자살'(종합) http://news1.kr/articles/?1184371
- 뉴시스, 2008.09.23. 구치소 호송대기중 마약 피의자 목매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22 93789
- 뉴시스, 2008.09.25. <종합>충남도교육감 선거 관련 검찰조사 받던 초교 교장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 003&aid=0002297227
- 뉴시스, 2011.07.14. 수입 인지 빼돌린 혐의 조사대상자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3965377
- 노컷뉴스, 2008.05.06. 마약사범 구치소서 목매 자살… 관리 부실 심각 http://www.nocutnews.co.kr/news/445393
- 노컷뉴스, 2010.04.14. 청주교도소서 40대 수감자 목매 숨져 http://www.nocutnews. co.kr/news/4160543
- 동아일보, 2012.05.25. 미래저축銀 女상무 목매 자살… "횡령의심 억울하다" http://news.donga.com/3/all/20120525/46519404/1
- 동아일보, 2004.02.03. 뇌물수수혐의 내사받던 국세청직원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02 24616
- 문화일보, 2014.06.17. 수뢰혐의로 영장청구된 철도시설공단 간부 자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7MW174638629157

- 매일신문, 2012.12.27. "진실은 검사님이 잘 아실 것" 뇌물 피의자 유서 남기고 자살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7949&yy= 2012#axzz3MD9nLGsN
- 아시아경제, 2014.04.13. '마약밀매 혐의' 30대 유서 남기고 자살 http://view.asiae. co.kr/news/view.htm?idxno=2014041314355138540
- 연합뉴스, 2014.07.18. '해수부 비리' 수사대상 공무원 모텔서 자살 http://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0 21632
- 연합뉴스, 2013.08.12. '한강서 실종' 김종률 유서 "검찰조사 모멸감 느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424331
- 연합뉴스, 2004.06.04. 이준원 파주시장 한강 투신자살(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0666602
- 연합뉴스, 2005.11.21. <이수일 前차장 자살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1154476
- 연합뉴스, 2005.02.20. 교도소 수감중 사망, 재소자 관리 허점 http://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09 17914
- 연합뉴스, 2006.01.21. <'시한폭탄' 강희도 경위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1201397
- 연합뉴스, 2006.05.15. 검찰 "박석안씨 자살 전 5차례 조사"(종합2보)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 0001297650
- 연합뉴스, 2008.02.21. <단위농협 감사가 뭐길래… 금품살포설에 자살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 &aid=0001968779
- 연합뉴스, 2008.09.03. '뇌물수수' 조사받던 연구기관 연구원 자살 http://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2 51800

- 연합뉴스, 2008.09.22. 딸 상습성폭행 혐의 조사받던 40대男 자살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277892
- 연합뉴스, 2009.01.29. 창원지검 구치감 화장실서 50대 피의자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474987
- 연합뉴스, 2009.03.24. '금품 제공' 혐의 농협 조합장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2568882
- 연합뉴스, 2009.04.01. '오락실 수뢰'혐의 수배… 전직 경찰관 자살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2585197
- 연합뉴스, 2009.05.23. <盧전대통령 서거> 극단적 선택 이유(종합)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2675249
- 연합뉴스, 2010.03.15. 경찰 내사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종합)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3169953
- 연합뉴스, 2010.04.30. '잇단 사무관 구속·자살'… 보은군청 뒤숭숭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 0003253870
- 연합뉴스, 2010.06.10. 검찰 조사받은 방산업체 前대표 자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3324339
- 연합뉴스, 2011.09.16. 충주조정경기장 입찰비리 교수 자살시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5268392
- 연합뉴스, 2012.02.14. 고리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직원 자살(종합)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5512258

- 오마이뉴스, 2004.02.06. "수모 감내 어려워… 고통 스스로 해결"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47&aid= 0000042143
- 주간경향 1107호 2014.12.3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3171711441&pt=nv
- 쿠키뉴스, 투신자살 박석안 전 국장 유서 전문… "명예 지킬 수 있는 길 택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 143&aid=0000026271
- 한국경제, 2013.06.17. 영훈국제중 교감 교내서 자살… 입시비리 주도 혐의로 검찰 수 사 받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771851
- 한국일보, 2014.07.03. 논문대필 수사 받던 의대 교수 자살 http://www.hankookilbo.com/v/76f67671840241bbb3018dc6edfad33d
- 한국일보, 2011.04.29. 기업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받던 회계사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 038&aid=0002146988
- 한겨레, 2011.05.30. 프로축구 승부조작 정종관 선수 자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0444.html
- 한겨레,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자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5540.html
- 한겨레, 2014.12.14. 검찰 수사 받다가 자살한 최 경위가 남긴 유서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992.html
- 한겨레, 2008.05.25. 성폭력 혐의 구치소 재소자 자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9637.html
- SBS, 2011.10.13. 여아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 받던 70대 자살 http://news.sbs. co.kr/news/endPage.do?news\_id=N1001005966
- YTN, 2008.07.23. 60대 대표 검찰조사후 자살, 경찰 경위조사 http://www.ytn. co.kr/\_ln/0103\_200807231630370508

# Abstract I

# The Causes and Prevention Measures for Criminals' Suicide during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Korea

Seong-Jin Yeon\* · Sung-Hoon Ahn\*\*

The statistics compi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reveal that the number of those under prosecutorial interviews and interrogation who committed suicide has reached 83 for the 10-year period of 2004 to July, 2014 and that the number has been sharply increasing for the past several years. Suicidal incidents occurring from the onset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or during interviews/interrogation might pose a big societal shock and cause an interference in the prosecutorial processing, resulting in the closure of the case as "no further prosecution." The media and the public are likely to have a very suspicious attitude regarding why one has committed suicide and to suspect that some political schemes or illegality might have played a role during investigation when it comes to the high profile criminal cas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suicide committed by those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ial office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y suicidal incidents among those under prosecutorial investigation.

Suicide cases compi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howed that there were 83 suicides committed during the process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from 2004 to July, 2014.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suicide case after 2010 is noteworthy, considering only one-digit numbers before then. Of those cases, the proportion of white-collar crime was higher than other types of crime — 72% of them were white-collar crime and 28% other types.

<sup>\*</sup>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up>\*\*</sup> Associate research fellow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riminal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involves face-to-face interrog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suspects or criminals and hard-pressing efforts by prosecutors to obtain any statements and confessions leading to any clues for criminal evidence. There is basically a conflict of interest where suspects/criminals try to conceal or deny any clues or facts of crime on the one hand, and prosecutors press hard to obtain any criminal evidence in this process on the other. If suspects are high rank public officials or famous entrepreneurs so that the mass media and the public pay attention to the case, they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depression, stress and shame. In the high profile cases, prosecutors are not free from stress due to the responsibility for digging out any criminal evidence when they allegedly express their emotional stress and anger to the interrogated suspects.

One solution for preventing any coercive interrogation could be videotaping of interviews with suspects — now being used if only prosecutors think it necessary — and it should be required to adopt in all cases when the investigated asks for it. Furthermore, an intensive educational program for investigators is necessary for stressing human rights of the criminal suspects and making the guidelines of investigation strictly conformed by them.

Investigators in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are prohibited by law to publicize any criminal cases under investigation. However, publication of criminal offenses through news media has occurred frequently without any criminal charges against it. The abnormal practice of agents' provision of criminal cases for news media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so that any fringe of individual privacy and human rights and defamation thereof may not lead to suicidal incident among the investigated.

The role of news media in reporting high profile or white-collar criminal cases is crucial considering the tendency that news media often distorts or dramatizes criminal cases for their own discretion and interests, leading to a severe intrus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unrecoverable defamation to the investigated. Media guidelines for publicizing crime incidents under investigation are called for.

Most of all, during the process of interview/interrogation by investigating agents, it is crucial that the investigated should be accountable for his/her suspected offenses before investigators and that investigators should strictly abide by the due-process rule.

# 부 록 ▮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 제정 2010. 1. 18. 법무부훈령 제761호 >
- < 개정 2010. 4. 22. 법무부훈령 제774호 >
- < 개정 2013. 7. 11. 법무부훈령 제903호 >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준칙이 적용된다.
- 제3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수 없다.
- 제4조 【인권보호의 책무】 ①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 【차별의 금지】 이 준칙에서 정하는 수사사건의 공보 및 인권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해석과 적용】 ① 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이 준칙은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되다.

## 제2장 수사공보의 기준

## 제1절 공보의 주체

- 제7조 【공보담당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대검찰청 : 대변인
  - 2. 고등검찰청 : 차장검사 또는 검사
  - 3. 지방검찰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포함한다) : 차장검사
  - 4. 지방검찰청 지청 :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관이 전담한다.
- 제8조 【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사건을 공보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사사건을 공보하게 할 수 있다.
  - 1. 대검찰청 : 부장, 수사기획관,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 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수석검사), 수사 과장

#### 제2절 공보의 요건

-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 제10조 【예외적 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 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 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 되는 경우
  -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 가 필수적인 경우
  - ② 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 제3절 공보의 방식 및 절차

- 제11조 【공보자료에 의한 공보 원칙】 ① 수사사건의 공개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의 1, 2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보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 ③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서두에 제10조 제1

항 각 호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구두브리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
  - 1.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 2.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촉구하는 등 효율 적인 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공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 하여 공보자료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할 수사내용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보를 마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보한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사건(관련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등 필요한 경우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
  - ⑤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수사사건의 공개가 본장 제 4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절 공보의 범위

- 제13조【일반원칙】 ①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 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

- 제14조 【표현방법】 ①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의 서두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회균등】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루는 언론사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익명 원칙】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OO", "BOO"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 1. A O O (35세, 회사원)
    -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한글 자음을 이용하고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위 공직자
      -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 사원 소속 공무원
      - 나. 국회의원

#### 104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 라. 교육감
-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워
-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 사.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 이 임명하는 자
-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 ③ 제2항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 【공개허용정보】 ① 수사사건 내용 중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호에서 제7호까지 및 제8호 나목은 제10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람,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공개 여부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기준에 의한다).
  - 1. 수사의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 (이첩·통보받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사의뢰(이첩·통보) 사실이 알려 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 나.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요지, 이하 같다)
    - 다. 수사의뢰(이첩·통보) 기관
    - 라. 수사의뢰(이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 2. 고소·고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소·고발을 제기하거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하여 고소·고발

- 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고소·고발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피고소·고발인
- 나. 죄명
- 다. 고소·고발인
- 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 3.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 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한다)
  -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기업
  - 나. 압수수색 일시
  - 다. 압수수색 장소
  - 라. 죄명
- 4. 출국금지 : 출국금지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 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7조 제2 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 5. 소환조사 : 소환 대상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 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 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소환 대상자
  - 나.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 다. 죄명
- 6. 체포·구속: 영장의 청구·발부 사실(구속영장에 한한다) 또는 집행 사실, 적부심 청구 사실이 공개되어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나 피의자가 제 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피의자
  - 나. 죄명
  -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 106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 바. 체포·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한다)
- 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 아. 석방 일시
- 7. 현장검증: 현장검증 계획이 알려져 검증 장소에서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한하여 검증 장면(이때 근접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수사 종결
  - 가. 기소사건
    - (1) 피고인
    - (2) 죄명
    - (3) 기소 일시
    - (4) 신병관계
    - (5) 공소사실
    - (6) 동종 범죄의 재발 억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 사경위, 수사방법, 범행의 경과 및 수사의 의의(향후 동종 범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불기소사건

- (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 (2) 죄명
- (3) 처분 주문
- (4) 종국처분 전에 혐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의 혐의사실
- (5) 종국처분 전후로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 이유(이 경우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 행수단
- 2.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 ③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허용정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 제19조 【공개금지정보】 ① 수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판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 4. 검증·감정,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
  -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 6.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개허용정보 외의 수사상황,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

수사계획

- 7.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 ②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 및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승인을받아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한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 제20조 【영장 등 공개 제한】 ①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사건에 관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도 제1항과 같다.
- 제21조 【법리 설명】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본장 제2절(공보의 요건) 및 제3절(공보의 방식과 절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내용이 공개되는 등 실질적인 수사사건의 공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초상권 보호

- 제22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 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23조 【예외적 촬영 허용】 ①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제1항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호송을 포 함한다) 또는 귀가 과정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취재 과정에서의 물리적 <del>충돌을</del> 방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 통제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4조 【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2조 제1항이 실 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검찰청(청사건물 및 그 부지) 내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 제25조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 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 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오보 대응

- 제26조 【수사공보의 실시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 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재하여 신속하 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보담당관은 제2장 제3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거나 해당 언론을 상 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 【수사공보의 범위 등】 ① 제26조에 의하여 수사공보를 실시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있다. 이 경우 수사사건 공개의 범위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제7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 자에 대하여 제24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장 수사 보안

- 제28조 【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 【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 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여야 하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제30조 【예외적 언론 접촉】 ①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수 사관은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기관 종사자와 대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면을 마친 검사 또는 수사관은 즉시 그 내용을 공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 제31조 【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공보담당관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중 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은 공보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 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33조 【승인서 등의 보관】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면은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때부터 10년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공보담당관이 보관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후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의 1 서식] (공소제기 후)

이 보도자료는 2010, 4, 26.(월)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0, 4, 26,(월)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ㅇㅇㅇ

전학 00-0000-0000/팩스 00-0000-0000

자료문의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 00-0000-0000 주책임자 : 특수부장 ○○○

제 목 ㅇㅇㅇ 사건 수사 결과

이 보도자료는 2010, 4, 26,(월)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검찰청

# 보도자료

2010. 4. 26.(월)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〇〇〇

전학 00-0000-0000/팩스 00-0000-0000

자료문의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0-0000-0000

주책임자 : 특수부장 ㅇㅇㅇ

제 목 ○○부 차관 ○○○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소제	וכו	ᅵ저	고ㅂ	1	LO
0.7.	<b>'</b>		$\circ^{\pm}$	~	т

- ☑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우려
- □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 범인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

#### [별지 제2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지청) 승인 불승인 검사장(지청장) 수 신 제 목 수사공보 관련 승인 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하여 수사공보를 시행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quare$ 공소제기 전 $\square$ 공개금지정보 $\square$ 촬영 등 금지 구두 브 리 핑 $\square$ 공 개 $\square$ 예 외 수사공보의 좆 류 ㅇㅇㅇ 사건 검 사 (당청 2009형제○○○, 죄명, 피의자 ○○○ 외 ○명) 브 리 핑 2010. 4. 26. 10:00 당청 브리핑룸 일시·장소 공소제기 전 ☑ 준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브리핑사유 □ 준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사건관계인 ㅇㅇ부 장관 피의자 ㅇㅇㅇ (실명) (실명공개 여부) '09. 9. 서울 ㅇㅇ구 뉴타운 건설사업 인 공개 범위 혐의사실 허가 관련 1억원 뇌물수수 4. 23. 구속 신 수사상황 4. 12. 피의자 소환조사 완료 7] 해당 없음 타 곳 개 해당 없음 금지정보 공적 인물. ㅇㅇ일보 등 언론에 소화사실 노출 예외사유 (본인 동의필) ○ 2010. 4. 26. 10:00경 및 조사 종료 후 촬 영 등 촬영 등 금 일시·장소 ○ 당청 정문부터 청사 현관 앞까지 지 예외 대 소환 및 귀가 과정 ○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약 50m) 조치내용 ○ 통제인력 배치(당청 수사관 등 30명) 첨부 : 공보자료 1부 20 . .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ㅇㅇㅇ (인)

## [별지 제3호 서식]

# ○ ○ 지 방 검 찰 청 (○○지청)

수 ,, 검사장(지청장)

제

긴급 수사공보 시행 보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하여 긴급으로 수사공보를 시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수사공보의 종 류	☑ 공소 기구 두	제 기 전 <sub>☑</sub> 공 개 금 지 정 보 브 리 핑   공    개		
사 건	ㅇㅇㅇ 사건 (당청 2010형제ㅇㅇㅇ, 죄명, 피의자 ㅇㅇㅇ 외 ㅇ명)			
공 개 범 위	브 리 핑 일시·장소	2010. 4. 26. 10:00 당청 브리핑룸		
	공소제기 전 브리핑사유	☑ 준칙 제12조 제1항 제3호 □ 준칙 제12조 제1항 제4호		
	사건관계인 (실명공개 여부)	ㅇㅇ부 장관 피의자 ㅇㅇㅇ (실명)		
	혐의사실	'09. 9. 서울 ㅇㅇ구 뉴타운 건설사업 인 허가 관련 1억원 뇌물수수		
	신 병	4. 23. 구속		
	수사상황	4. 12. 피의자 소환조사 완료		
	기 타	해당 없음		
	공 개 금지정보	별지와 같음(피의자 진술, 증거관계)		
미리 승인 을 받지못한 사 유	구두브리핑	○○일보 등 언론에서 즉시보도를 전제로 전화 확인요청하여 긴급하므로		
	공개금지정보 공 개	○○일보 등 언론 보도로 즉시 대응이 필요 하여 긴급하므로(사전 구두승인필)		

20 . . .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ㅇㅇㅇ (인)

#### 연구총서 14-AB-09

#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박상옥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화신문화(주) (02)2277-0624 ISBN | 978-89-7366-470-2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